

영등포구의회
제20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5. 16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13호로 2017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대통령령 제27713호, 2017.1.1.공포·시행)으로 청소·환경 등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 수행을 위한 ‘생활환경국’을 신설하고, 구 미래비전, 지역협치, 도시재생 등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현장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생활환경국 신설

- 생활환경국 신설(안 제3조)
- 생활환경국 조직 및 분장사무 신설(안 제8조)

나. 국 신설에 따른 조직 및 국별 분장사무 조정(안 제8조)

- 가로경관과(※건설관리과 명칭변경) : 안전건설국 → 생활환경국

- 청소과 : 복지국 → 생활환경국
- 환경과 : 복지국 → 생활환경국
- 푸른도시과 : 도시국 → 생활환경국

다. 구정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

(안 제4조, 안 제9조)

- 기획담당관 신설
- 도시재생과 신설

라.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과 명칭 변경

(안 제6조, 안 제8조)

- 기획예산과 → 재정관리과
- 건설관리과 → 가로경관과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는 행정기구 수의 범위를 규정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2016년 1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구에 대한 전년대비 행정수요 변화율 및 기구의

수 등을 산정한 결과, 1개국이 증설 통보됨으로서, 현행 5개국에서 6개국으로 하여 생활환경국을 신설하고, 그에 따라 조정되는 부서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, 분담사무를 정비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○ 개정안의 주요내용(현황표 참조)을 살펴보면,

※ 주요내용 현황표

국 신 설	▶ 생활환경국	(안 제3조)
생활환경국 신설에 따른 구성안	부서명	변경전 국
	가로경관과	안전건설국
	청소과	복지국
	환경과	복지국
	푸른도시과	도시국
		(안 제8조 신설)
부서 신설	▶ 기획담당관 ▶ 도시재생과	(안 제4조) (안 제9조)
부서 명칭변경	▶ 기획예산과 ⇨ 재정관리과 ▶ 건설관리과 ⇨ 가로경관과	(안 제6조) (안 제8조)

안 제3조에 생활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며, 그에 따라 안 제8조에 가로경관과, 청소과, 환경과, 푸른도시과 등 4개 소관 부서로 재편하여 현장 중심조직의 행정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며,

- 안 제4조에 부구청장 밑에 기획담당관을 신설하여, 구정의 핵심과제 추진과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을

설치하는 것으로 보임.

- 안 제6조 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를 재정관리과로, 안 제10조 안전건설국의 건설관리과를 가로경관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제8조 생활환경국으로 재편하고,
 - 안 제7조 복지국에 청소과와 환경과를 생활환경국으로 재편하였으며,
 - 안 제9조 도시국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,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구정의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며, 기존, 도시계획과의 일부 업무를 분리하여 도시재생과로 흡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자치 구현과 주민 접점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 조직 신설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,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사무의 성격과 업무량의 적정 분담을 통하여 조직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,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,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-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6.29.>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영등포구의회
제20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5. 16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14호로 2017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. 7월 시행되는 조직 개편사항과 복지, 주민 건강 증진 등 증가하는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개정(안 제2조)

- ‘1,387’을 ‘1,402’로 개정(증 15명)
- 집행기관의 정원 : ‘1,360’을 ‘1,375’로 개정(증 15명)

나. 정원의 직급별 정원포 개정(별표 3)

- 총계 ‘1,387’을 ‘1,402’로 개정(증 15명)
- 일반직 총계 ‘1,382’를 ‘1,397’로 개정(증 15명)

- 일반직 4급 총계 '7'을 '8'로, 4급 본청 '6'을 '7'로 개정 (증 1명)
- 일반직 5급 총계 '62'를 '64'로, 5급 본청 '31'을 '33'으로 개정(증 2명)
- 일반직 6급 이하 '1,310'을 '1,322'로 개정(증 12명)

기관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직급별						
총 계		1,402	1,402			
정무직		1	1			
일반직 계		1,397	1,397			
일	3급	1	1	-	-	-
	4급	8	6	1	1	-
반	5급	64	33	2	11	18
	6급 이하	1,322	1,322			
직	전문경력관	2	2			
	별정직 계	4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일반직 신규 임용 인건비(9급 3호봉 기준)

1) 소요예산액

(단위:천원)

합계	국비	시비	구비	비고
708,277	16,500	8,250	683,527	국비:시비:구비 = 50:25:25

2) 세부내역

○ 채용인원: 15명(4급 1명, 5급 2명, 7급 1명, 8급 4명, 9급 7명)

(단위:천원)

구 분	금 액	산 출 근 거
합 계	708,277	
기본급 (봉급)	468,164	4급, 5급 연봉 상한액 6급 이하는 각 직급 3호봉 기준
직급보조비	28,980	2,415,000원×12월 = 28,980천원
국민건강 보험금	9,826	국민건강보험금 9,826천원
연금 부담금 등	51,920	연금부담금 등 51,920천원
수 당	149,387	- 가족수당 5,328천원 - 정근수당 9,319천원 - 시간외근무수당 71,514천원 - 정액급식비 23,400천원 - 명절휴가비 23,296천원 - 연가보상비 11,130천원 - 기술업무수당 5,400천원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신설되는 국과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,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증원 하려는 것으로서,

○ 개정안의 주요내용(직급별 세부 증원 내용 참조)을 살펴보면,

※ 직급별 세부 증원내용

직급	증원	증원 필요성	
계	15명		
4급	1명	○ 생활환경국 신설에 따른 증원	
5급	2명	○ 2개 부서 증가에 따른 증원 : 기획담당관, 도시재생과	
6급 이하	12명	부서 신설	○ 기획담당관, 도시재생과 4명
		국가 정책	○ 저출산 대응체계 : 1명 ○ 지역공동체 사업 : 1명 ○ 사회복지 분야 : 2명
		주요 사업	○ 지역건강증진 사업 : 3명 ○ 녹지사업 : 1명

- 안 제2조,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는 현재 1,387명에서 1,40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,217억원 내에서 15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,
- 안 제4조 “별표3”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, 일반직의 4급 1명, 5급 2명, 6급이하 12명 등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.
- 이는,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신설되는 생활환경국과, 기획담당관, 도시재생과 등 신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, 4급 1명, 5급 2명, 6급이하 4명 등 7명을 증원하는 것이며,

- 그밖에 정부의 시책추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저출산 대응 체계 구축 1명, 지역공동체 사업 1명, 사회복지 분야 2명, 지역건강증진사업 3명, 녹지사업 1명 등 8명을 신규 증원하는 것으로 보임.

○ 위와 관련하여, 2017년도 우리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,217억원이고, 예산 편성액은 1,148억원임을 감안할때, 신규 증원되는 15명의 인건비는 연간 7억 8백만원으로, 향후,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(※ ‘2017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현황’ 참조)

【 불 임 】

2017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

□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: 121,700,397천원

□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: 114,895,871천원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
총 계	114,895,871
101 인건비	91,970,524
101-01 보수	73,482,627
101-02 기타직보수	5,270,292
101-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	13,217,605
204 직무수행경비	2,468,700
204-02 직급보조비	2,468,700
303 포상금	4,156,659
303-02 성과상여금	4,156,659
304 연금부담금등	16,299,988
304-01 연금부담금	13,596,757
304-02 국민건강보험금	2,703,231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(이하 "자율범위"라 한다)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36조(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.